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3나6230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3나6230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3가단1388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특수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이형범

변론종결 2024. 3. 26.

판결선고 2024. 5. 14.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3가단1388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및 부 대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257,5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253,450원¹⁾과 이에 대하여 2020. 6.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부대항소장에서 부대항소취지를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1,811원과 31,253,450원에 대하여 2020. 6. 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더 지급하라’고 기재하고, 위는 ‘피고는 원고에게 31,253,4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과 같은 취지라고 하였는바, 이를 위 기재와 같이 선택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판매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향상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등 공제사업을 위하여 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2020. 6. 9. 법률 제173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관련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2. 5. 1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 가입하여 출자금을 납부하고 피고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자금대여나 이행보증 등의 공제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2. 5. 15.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총 50좌에 해당하는 출자금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출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출자금에 대하여 발행된 출자증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2002. 5. 29.부터 2004. 5. 10.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라. 강남세무서는 2004. 8. 30.경 이 사건 출자금에 관한 원고의 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고 그 압류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04. 9. 2. 이 사건 공제계약 및 이 사건 출자증권에 설정된 담보를 해지하고, 위 압류 통지에 따른 사전구상권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출자증권 및 그에 따른 원고의 출자지분을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출자금 상당액을 예수금(이하 ‘이 사건 예수금’이라 한다)으로 전환하였다. 한편 강남세무서는 2004. 9. 17.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예수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다가, 2020. 5. 28.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피고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니 출자금 등과 관련하여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원고의 자산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6. 3. 원고에게 이 사건 예수금 5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바. 피고 조합의 정관과 지분취득관리규정(위 정관 제28조 제3항에 따른 지분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정관

○ 조합원은 그 지분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공제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제20조 제1항).

조합원은 그 출자증권을 전부 양도하였을 경우 공제조합으로부터 당연 탈퇴된다(제20조 제2항 제3호).

○ 공제조합은 출자자가 출자금을 납부한 때에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에 출자목적으로 출자금 또는 출자예탁금을 납입한 자는 납입일에 당해 납입금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제23조 제1항).

○ 공제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고(제28조 제1항 제2호), 조합원이 제20조 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탈퇴한 경우에 출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취득을 요구하는 경우 공제조합은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하여야 하며(제28조 제1항 제3호), 이 경우 공제조합은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제28조 제2항).

2) 지분취득관리규정

○ 조합원이 공매공고일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이행하고 취득지분반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은 취득지분을 반환할 수 있다(제6조 제1항).

1. 조합채무를 완제하였을 때

2. 가지급금, 과태료, 연체이자 등이 완전 정리되고 채무원금의 일부를 납입하여 잔여채권의 회수가 확실할 때

3. 별도의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을 때

4. 기타 조합채권의 침해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 취득한 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공매처분(일반경쟁입찰)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8조 제6호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그 처분이 지체될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유예할 수 있다(제7조 제1항).

○ 취득지분의 매각대금 중 조합채권을 회수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가수금으로 처리한 후 지체없이 당해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된 출자권을 담보로 하는 채무가 남아있을 때에는 그 채무가 해제될 때까지 반환을 유보한다(제9조 제1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 12호증, 갑 제3호증의 3, 을 제4, 6,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 1) 원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 2) 피고는 강남세무서의 이 사건 출자금에 관한 압류 통지를 받고 2004. 9. 2. 이 사건 공제계약 및 이 사건 출자증권에 설정된 담보를 해지하고 위 압류 통지에 따른 사전구상권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출자증권 및 그에 따른 원고의 출자지분을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출자금 상당액을 예수금으로 전환하였다. 강남세무서는 2004. 9. 17. 피고에게 채권압류해제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3) 피고는 별지 기재 보증서 발급에 따른 원고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예수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다가, 2020. 6. 3. 원고에게 이 사건 예수금 5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그러나 2010. 1. 1. 위 1) 기재 보증서에 따른 피고의 보증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예수금 50,000,000원을 즉시 반환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상법에 정해진 법정이자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예수금액 50,000,000원에 대한 2010. 1. 2.부터 2020. 6. 3.까지의 부당이득 31,257,534원 $[50,000,000원 \times 6\% \times (10 + 153/365)]$ 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강남세무서의 이 사건 출자금에 관한 원고의 채권 압류와 그 통지에 따라 2004. 9. 2. 피고가 이 사건 공제계약 및 이 사건 출자증권에 설정된 담보를 해지하고 이 사건 출자증권 및 그에 따른 원고의 출자지분을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출자금 상당이 예수금으로 전환된 사실, 원고가 2020. 5. 28. 피고에 대하여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피고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니 출자금 등과 관련하여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원고의 자산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20. 6. 3. 원고에게

이 사건 예수금 5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은 앞의 1.의 가. 내지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의 1.의 바. 기재 피고 조합 정관과 지분취득관리규정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조합원은 그 출자증권을 전부 양도하였을 경우 공제조합으로부터 당연 탈퇴되고(정관 제20조 제1항, 제2항), 이 경우 조합원이 출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취득을 요구하는 경우 공제조합은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하여야 하며(정관 제28조 제1항 제3호), 공제조합은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하고(정관 제28조 제2항), 취득한 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공매처분(일반경쟁입찰)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고, 취득지분의 매각대금 중 조합채권을 회수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가수금으로 처리한 후 지체없이 당해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나, 조합원이 공매공고일전에 일정한 조치를 이행하고 취득지분반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은 취득지분을 반환할 수 있는(지분취득관리규정 제6조 제1항)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보증서 발급에 따른 피고의 보증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예수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2020. 5. 28.자 조합 탈퇴와 출자금 반환 요청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예수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의 보증서 발급에 따른 피고의 보증채무가 모두 소멸한 즉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예수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채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예수금 반환 지체로 인한 이자 상당의 손해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할 뿐이고 이를 가리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복규, 판사 오연정, 판사 안승호

별지

- 1.부터 2010. 2. 14.까지 45일간의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
- 2) 구매입찰이 2차에 걸쳐 유찰되거나 제9조의 요령에 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정가격이상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